

5.1.15 비행교육원규정

제정 2014. 04. 24.

개정 2016. 06. 23.

개정 2020. 12. 31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초당학원정관 제120조에 따라 초당대학교 부속기관인 비행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06.23.>

제2조 (명칭) 본원의 명칭은 “콘도르비행교육원”(이하‘콘도르교육원’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6.06.23.>

제3조 (위치) 콘도르교육원은 초당대학교 산하에 두며, 비행실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공항 및 비행장 등 교외에 두고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23>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 (조직) ① 콘도르교육원에는 운영관리본부를 두고 비행교육부, 경량항공부, 항공정비부, 행정관리부를 둔다. <개정 2020.12.31.>

② 원장 및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 이상으로 보하고 또는 비행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하되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원장은 콘도르교육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④ 본부장은 콘도르교육원 사업계획, 회계 관리, 운영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.

⑤ 각 부에는 부장 및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추가로 담당업무에 따른 반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.>

⑥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비행교수라 칭하며 비행실습은 물론 모의비행교육과 이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23.>

⑦ 콘도르교육원 의 처우는 우리 교직원(비행교수 등)대학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. 다만, 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23.>

⑧ 콘도르교육원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국내외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23.>

⑨ 교육원의 조직표는 <별표 1>과 같다.

제5조 (비행교수의 자격) ① 비행교수의 자격 및 경력기준은 본교 관련규정 또는 항공안전법 등에 정한 자격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06.23., 2020.12.31.>

② 삭제 <2020.12.31.>

③ 삭제 <2016.06.23.>

제6조 (기능) 제4호에 따른 조직구성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06.23.>

① 운영관리본부

1. 콘도르교육원의 부서 총괄
2. 운영 및 경영관리
3. 회계관리

② 비행교육부

1. 단발 및 다발항공기 비행교육계획의 수립과 운영
2. 단발 및 다발항공기 비행교육수행과 평가
3. 비행교수관리 <개정 2016.06.23., 2020.12.31.>

③ 행정관리부 <개정 2020.12.31.>

1. 콘도르교육원 사업계획
2. 운영 및 경영에 관한 행정업무
3. 교육훈련생 입과 및 수료관리 <개정 2016.06.23., 2020.12.31.>
4. 항공기 운항관리 <신설 2016.06.23.>

④ 항공정비부

1. 기술관리를 위한 정비계획수립, 부품 및 장비 관리업무 <개정 2016.06.23.>
2. 정비관리를 위한 항공기 정비/수리개조 업무 <개정 2016.06.23.>
3. 항공정비분야 교육훈련, 외부항공기 위탁정비업무 <신설 2016.06.23.>

⑤ 경량항공부 <신설 2020.12.31.>

1. 경량항공기 비행교육계획의 수립과 운영
2. 경량항공기 비행교육수행과 평가
3.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업무
4. 비행교수관리
<전 호 신설 2020.12.31.>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

제7조 (교육과정)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전문교육기관 과정으로 운영하며, 각 호의 교육과정을 통합 혹은 개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23., 2020.12.31.>

1. 자가용조종사과정
2. 계기비행한정과정
3. 사업용조종사과정

4. 삭제 <2020.12.31.>
5. 삭제 <2016.06.23.>
6. 삭제 <2016.06.23.>
7. 삭제 <2016.06.23.>
8. 등급한정추가과정 <신설 2020.12.31.>
9. 조종교육증명과정 <신설 2020.12.31.>
10. 경량항공기조종사과정 <신설 2020.12.31.>
11. 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타의 교육과정 <본 호 이동 2020.12.31.>

② 삭제 <2016.06.23.>

제8조 (선발 및 입과) 콘도르교육원에 입과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. 이때 교육생은 별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입과할 수 있으며, 입과 시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- ① 콘도르교육원에 입과 할 수 있는 자는 항공운항학과 재학생 및 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로 하며, 입과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콘도르교육원 교육규정 및 운영지침서에 따른다. <개정 2020.12.31.>
- ② 비행교육원장이 입과를 허락한 자는 과정별로 소정의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- ③ 입과 시 계획된 교육훈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 교육훈련비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- ④ 각 과정별 교육훈련비는 비행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<개정 2020.12.31.>
- ⑤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학칙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자 또는 면학 분위기를 흐린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.>
- ⑥ 그 밖에 선발과 입과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서에 따른다. <신설 2020.12.31.>

제9조 (교육운영) ① 각 과정의 커리큘럼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상황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고려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- ② 각 과정의 실습수업은 학사일정 및 교육계획에 따른다. 다만 운항실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무일 및 방학 중에도 운항실습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.>
- ③ 제7조의 교육과정은 각 과정별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. <신설 2020.12.31.>
- ④ 각 과정별 최종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<별표 2>와 같이 해당과정에 대한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. <신설 2020.12.31.>
- ⑤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2.31.>

제10조 삭제<2016.06.23>

제11조 삭제<2016.06.23>

제12조 삭제<2016.06.23>

제4장 사업, 재정 및 회계

제13조 (사업) 콘도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6.06.23>

1. 초당대학교 재학생의 교육훈련 <개정 2016.06.23>
2. 타 대학 위탁 교육훈련 <개정 2016.06.23>
3. 외부 및 기업체,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교육훈련 <개정 2016.06.23>
4. 전문가 양성 및 항공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용역사업 <개정 2016.06.23>
5.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교육원 운영에 이로운 사업 <개정 2016.06.23>

제14조 (재정) 콘도르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본교에서 배정하는 실습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그 수입·지출은 교비회계로 처리한다. <개정 2016.06.23>

제15조 (회계) 콘도르교육원의 회계년도는 초당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르며, 회계관리는 대학본부에서 한다.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6조 (설치 및 구성) ① 콘도르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사무처장, 운영관리본부장, 항공운항학과장, 비행교육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필요시 위원장이 추가 할 수 있다. 간사와 서기는 행정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6.06.23>

③ 운영위원회는 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위원회 임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콘도르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2. 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중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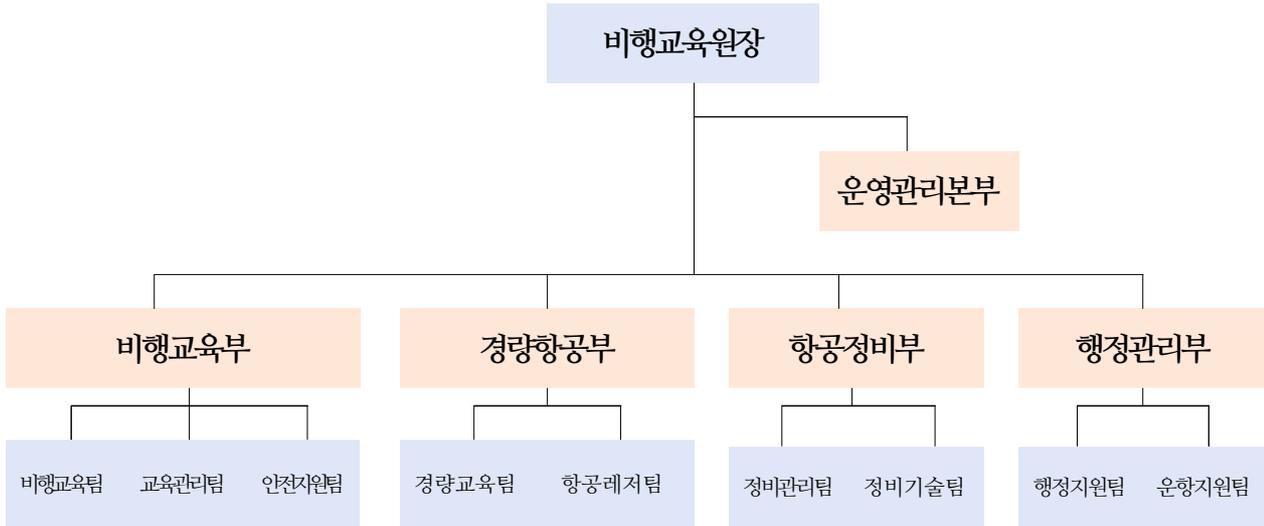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삭제 <2016.06.23.>, <개정 2020.12.31.>

비행교육원 조직도





수료증서

성명 :
생년월일 :
교육과정 :
교육기간 :

상기인은 위와 같이 초당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 교육과정을
수료 하였음을 확인함.

20 년 월 일

초당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장